



# 관세청

수신 한국관세사회장  
(경유)

제목 RCEP 품목별 원산지기준(PSR)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 
관련 안내 요청

1.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귀 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」 부속서 3-가(품목별 원산지 규정)에 적용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'23.1.1.부터 HS2022기준(현행 HS2012)으로 전환·시행됩니다.
3. 이에 따라, 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22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. 또한, 기존 RCEP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품목의 세번 또는 PSR이 변경된 경우 '23.2.28.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변경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.
4. 관련하여 RCEP PSR 개정에 따른 안내문 및 인증재심사, 변경신고 대상 세번을 제공 하오니 소속 관세사 및 수출입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RCEP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 1부.  
2. RCEP PSR 개정에 따른 인증 재심사, 변경신고 대상 세번 1부. 끝.

관세청장



관세행정관	<b>김호현</b>	행정사무관	<b>김진선</b>	국제협력총괄	전결 2022. 12. 28.
				과장	<b>민희</b>
협조자					
시행	국제협력총괄과-3802	(2022. 12. 28.)	접수		
우	35208	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1동 (둔산동)	/ www.customs.go.kr		
전화번호	042-481-3221	팩스번호	042-481-7969	/ hhony1201@customs.go.kr / 비공개(6)	